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3. 2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3. 4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9호
- 라. 상정일자 : 2004. 3. 1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한 경남도의 인력 승인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안 제2조)
 - 총 계 : 607명 ⇒ 628명(증 21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 ⇒ 614명(증 21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3. 검토내용

- 가. 기구 및 인력증원 협의(군 ⇔ 경남도, 2004. 2. 20)
 - 3담당 신설, 21명 증원(6급 3, 7급 7, 8급 6, 9급 3, 기능 2)

○ 담당별 인력 및 주요업무

담당명	인원	주요업무
계	21명	
평생교육담당	4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생학습도시의 교육특성화 여건조성(신규) ○ 대학 등 교육기관 지원육성(기획감사실+행정과) ○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과목 개발(기존)
가축위생담당	4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유공장 및 섬유질가공 사료공장 건립에 따른 수요증가 ○ 조류독감, 구제역 등 가축질병업무 증가 ○ 축산업등록제(2004시행)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운영
방문보건담당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증가로 의료취약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○ Call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
신규행정수요	1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읍면 7명, 건축 1명, 상하수도 1명, 주차단속요원 2명

나. 보정정원 활용

- 보정정원(정원의 5%) 총 30명 : '04년도 21명, '05년도 9명
- 협의시 경남도의 당부사항

보정정원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인건비 보조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,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인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다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근거 및 참고 자료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[경남 행정~1614 (2004. 2. 20)]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 보조 자료

1.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(안)-----	1
2.거창군사무분장규정중개정규정(안)-----	3
3.증원내역(증원 배치계획)-----	10

거창군의회총무위원회